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한 기업 경영과 특허 전략

박성택* 이승준** 김영기***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국제 특허 분쟁 사례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특허 분쟁 | |
-

Key Words : 특허분쟁, 기업경영, 특허전략, 지식재산권

Abstract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solpherd@cbnu.ac.kr 011-469-7256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check81@cbnu.ac.kr 011-9952-7543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ykkim@cbnu.ac.kr 043-261-3141

I. 서론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정보화와 지식·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신기술·지식의 보고인 특허를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 재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IT 혁명으로 인해 한국은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정보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특허 분쟁이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 성쇠를 좌우하고 국가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급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기업 경쟁력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다.

20년 전에 미국은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기업 전체 자산의 38%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9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특허권으로 인한 수입이 82년 100억불에서 2003년 1,500불로 20년 동안 15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 경영과 특허 전략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영 전략

전략의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들어 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Chandler는 전략을 ‘특정 기업이 장기적 목표과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행위들을 수행하고 자원을 배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Quinn은 ‘기업 조직의 주요 목표, 정책, 행위들을 하나의 응집체로 통합시키려는 계획’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영 전략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정의는 전략을 합리적 계획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특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이론들의 공통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전략이란 개념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안영민, 2001)

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고,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체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한다.

1) 산업체재산권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체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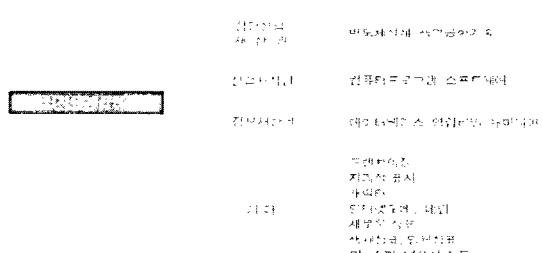
2)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해당 지식 재산권을 만든 사람의 생애와 사후 70년 동안 그가 만든 창조물이 복제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기업이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권은 95년 동안 유효하다. 미 의회는 저작권 보호를 서적, 잡지, 음악, 강의, 그림, 영화 까지 확장하였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개발자가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긍정적 및 기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창조성과 저술을 촉진

시키는데 있다.

3)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특허청

4)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와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나.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 가능.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III. 특허 분쟁

특허 분쟁은 1985년 대통령 산업경쟁력위원회에서 미국 경제의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용어가 바뀜)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로서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한 국가정책이다.

1986년 2월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는 삼성전자 및 타 반도체업체가 반도체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19개 회사를 일본회사와 함께 제소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회사는 Cross-License 협상을 통해 해결을 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항소하여 CAFC에서 패소를 하여 8천 5백만불을 배상

하였다.

특허 침해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은 ‘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쟁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사건은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허 분쟁은 침해로부터 유발되므로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지만, “분쟁”이 “침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가진 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특허 분쟁 연구는 종래의 법학적 관점과 더불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종래의 정태적·법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기업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적 관점, 국가의 분쟁 대응 능력 제고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론적 관점, 그리고 갈등이라는 소모적 사회 현상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사회학적 관점을 모두 갖는 이른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특허 분쟁 특징

1) 언어로 표현된 관념적 권리에 관한 다툼

특허권의 실체는 사실 관념적인 것이다. 즉, 특허등록부에 명세서와 청구항이라는 언어 형태로 존재한다. 특허권의 가장 핵심되는 권리내용으로서 원형(archetype)을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때로 축소) 되기도 한다. 이른바 원형(archetype)을 중심으로 한 이념형(ideal type)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개념’ 이란 원형(archetype)을 중심으로 한 친족구조(family structure)라고 하였는데, 이는 특허권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또는 시제품 등, 실제 현실에서의 구현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많은 변형

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현실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나는 구현체(또는 침해품이라 주장되는 물품)들이 명세서와 청구항으로 표현된 권리 범위내에서 세작된 것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전문적 판단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특허분쟁의 가장 특징적 현상이다.

2) 특허침해의 용이성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체 재산은 그 객체가 명확하므로 그 침해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므로 침해여부를 일견하여 알기도 어렵고, 권리자에 의한 사실상의 점유가 불가능한 데다 권리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므로 침해 유혹에 놓이며, 또 쉽게 침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이 특허분쟁을 야기하고, 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한다.

3) 특허성 판단 및 침해 여부 판단의 전문성

특허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여부 및 유효요건(validity)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이어서 침해소송이 제기된 일반 민사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 판단 기관도 다르다. 특허등록부에 존재하는 특허권은 유체개산처럼 객관적으로 권리한계가 구분되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특허요건에 하자가 있는지 일반법관은 쉽게 알 수가 없다. 이로 인해 특허권의 효력 유무, 권리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판단은 일반법원과는 다른 행정부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 기관에서의 별도의 판단절차를 필요로 한다.

4) 분쟁의 장기화, 배상액의 고액화로 대부분 분쟁 중 상호 타협

분쟁의 장기화,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로 특허 침해 소송 중 5%미만이 개판 판결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코닥과 폴라로이드사 특히 분쟁처럼 종국판결까지 갈 경우 이자지급액이 손해배상액 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협을 보는 것으로 보인다.

2. 특허 분쟁 원인

1) 특허권

보호강화가 역설적으로 특허분쟁을 유발하였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I)사의 특허분쟁 승소, 폴라로이드사의 승소 등에서 보여지는 사법부의 친특허적 판결과 강화된 특허 보호정책은 역설적으로 특허 자체를 독립된 상품으로 보아, 사업화보다는 오히려 로열티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 특허 분쟁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2) 라이센스

계약상의 흠결 또는 협상 결렬 기본특허를 모든 기업이 소유할 수는 없으므로 라이센스 계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라이센스 계약시 수익분배, 하자 담보책임 규정을 빠짐없이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분쟁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특허권의 라이센스(License) 계약을 진행하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상대방이 관련 기술을 알게 되어 특허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3) 맞소송 유발 및 소송의 복합화

하나의 침해사건은 상대방의 맞제소를 낳고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통상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특허권의 무효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무효심판의 결과에 따라 정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금지청구,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특허무효심판, 가처분 신청, 형사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4) 기업 특유의 전략적 판단

특허 분쟁이 반드시 특허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도 및 시장점유율 등 기업 특유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만도 김치냉장고 분쟁사례는 잘 보여준다. 만도공조는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한 뒤, 빌텍과 신일산업 등 중소 김치냉장고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만도공조가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뢰 의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법적 대응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을 선택한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5) 특허출원 수 누적과 기술의 세분화·융복합화

현대 발명의 대부분이 개량 발명인 까닭에 누적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진보성 요건 판단 및 해석 차이, 특허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의 어려움, 표현의 불명확성, 누적되는 특허 출원, 기업의 공세적 특허분쟁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허분쟁을 증가시키는 근원적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휴대폰, BM특허, MP3, LCD 등 전자제품은 한 개의 제품에 수천 개의 특허가 복잡한 권리 관계로 얹혀 있어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특허사냥꾼(Patent Troll)

Patent Troll은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화 하는 대신 로열티만 챙기는 기업이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소송꾼을 말한다.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특허 알박기도 유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미국에서는 Patent Troll을 위한 특허 경매가 자주 열리고, 특허 중개를 위한 전문 컨설팅 회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Lemelson 특허는 이른바 잠수함특허(submarine patent)의 전형적 사례로서 이를 잘 보여준다. 개인발명가인 Jerome H. Lemelson은 특허출원(1954. 12. 24)을 한 후 계속출원 제도와 출원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최초 몇 건의 출원을 이른바 ‘가지치기’ 수법으로 계속출원 형식으로 잇따라 출원하되, 이들 중 14년이 지난 1978년 이후에 특허를 받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USPTO에 계류 중인 출원도 있다고 한다. Lemelson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시장에서 충분히 성숙된 후 주요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주장을 제기하여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두고 있다.

7) 계절적 요인 또는 경기흐름

계절적 요인 혹은 경기흐름에 따라 제품 수요가 증대되면 특허 심판청구가 증가한다는 것 이 경험적 지적이다. 전기메트, 보온 압력 밥솥, 족탕기, 안경, 전기난로 등 웰빙 관련 제품 또는 생활용품이 계절 또는 경기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면서 특허분쟁이 증가하기도 한다.

8) 새로운 시장 형성과 지식생산성 증가로 인한 높은 이익 양여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장이 출현 확대되어 이익잉여가 크면, 타 기업의 시장 진입 욕구를 촉발하며, 후속기업은 특허권 진입 장벽을 피하기 위해 회피설계(design around)를 하거나 또는 불완전이용 침해 등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특허 분쟁이 유발된다. 이익의 잉여가 클수록 블루오션이던 신시장은 새로운 기업의 쇄도로 레드오션으로 변화되어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에 비례해서

분쟁이 유발된다. 휴대폰, MP3, LCD PDP,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IT 분야에서 잘 보여준다.

9) 기술 유출로 인한 특허분쟁

기업간 기술 유출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영상저장시스템 업체인 S사는 F정보통신이 동영상 압축설계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F정보통신 측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10) 규범 부재 및 무임승차

한국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 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지면서 내면화된 규범의 연속성이 없는 사회화 과정의 단절을 겪음으로써 이른바 아노미(Ailomie, 규범붕괴), 한탕주의 등이 만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한건하려는 식의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가 지배적이었다. 이 역시 특허분쟁을 야기하는 주요인이라 할 것이다.

3. 국내 기업의 특허 분쟁 준비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술 개발 뿐”이라며 ‘특허 중시 경영’을 선포했다. 현재 5위권에 머물고 있는 미국 특허 등록 순위를 2007년에는 3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250여명 수준이던 특허 전담 인력을 2010년까지 450명(300여명은 변리사)으로 늘리기로 하고 국제 특허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2010년까지 세계 IT·전자업계에서 특허 경쟁력을 기준으로 3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출원건수를 연간 2,000여건에서 2010년에는 5,000여건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V. 국제 특허 분쟁 사례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 급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주요 국제 특허분쟁은 58건이다. 그러나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 발생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가 47건, 화학·약품이 9건이다. 전기·전자분야는 주로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화학·약품은 국내 제약업체의 내수용 카피약

품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주력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일본, 미국 등지의 선진 기업들은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 일본의 후지쯔와 마쓰시다가 각각 삼성 SDS, LG전자의 PDP에 대한 통관금지 요청을 하는 등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특허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분쟁 방식도 先소송·後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 중단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방식을 활용되고 있다. 특허 분쟁 사례는 크게 전기전자, 화학 약품, 기계분야로 구분하였다.

<표 1> 외국기업과의 기술 분야별 특허분쟁 건수 ('00~'06년)

분야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7월 까지	소계	총계
전기 전자	PDP	-	-	-	2	1(1)	-	3(1)	47
	LCD	-	-	1(1)	1	3	-	-	
	반도체	1	1	1	1	2	6(1)	2(1)	
	휴대폰	-	-	-	1	3	1	5	
	DMB	-	-	-	4	-	-	4	
	컴퓨터	10(10)	2(2)	-	-	-	-	12(12)	
	기타	-	1	-	2	1(1)	-	-	
화학 약품	약품	1	1	1	1	3	-	-	9
	섬유	-	1	-	-	-	-	-	
	식품	-	1	-	-	-	-	-	
기계	자동차	-	-	-	-	-	-	1	2
	정밀 가공	-	-	-	-	-	-	1	
	합계	12(10)	7(2)	3(1)	5	16(1)	10(2)	5(1)	58(17)

※ 국내외 법원 및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 (분쟁 발생연도 기준)

○ 제소기관 및 피소 업체 당 1건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1. 전기 전자 분야

1) 휴대폰

2006년 7월 28일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1건을 침해하였다고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에릭슨은

일실이익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덧붙여 정벌적 배상도 청구(상기 특허들 중 3개는 휴대폰의 전원기술과 관련되어 있음)하였다. 또한 에릭슨과 삼성전자 사이의 크로스 라이센싱이 2005년에 만료함에 따라 2006년 2월에 에릭슨이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2) 반도체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하였다. 배심평결에서 Rambus사는 10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인정, SDRAM, DDR, DDR2 메모리 제품에 대해 3억 690만 달러 손해 배상 판결하였다. 손해 배상액 3억 690만 달러에서 1억 3360만 달러로 감액 승낙 발표하였다. 현재 2006년 8월 21일부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업체가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칩셋 특허 침해를 이유로 다수의 Intel 고객사들을 제소했다(인텔 자체는 피고는 아님). Intel사와 LG전자는 제품 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ntel사의 고객사들은 해당 제품들을 Intel사 외의 제품과 결합은 비허용했다. 북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에 의해 LG전자의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판시하고 LG전자는 약식판결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의 판매는 최초의 판매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Intel사의 고객사들이 해당 제품들을 Intel사 외의 제품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명시)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PDP

2005년 초, 파나소닉이 LG전자를 상대로 PDP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호 간의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파나소닉의 2단계 공장 증설 계획의 시작에 의해 삼성의 PDP 시장에서의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짐에 따라 삼성이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LCD

프랑스의 CEA(원자력위원회: 에너지, IT, 보건, 국방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기관)는 삼성이 자사의 VA방식인 화질보전 기술관련 LCD 특허를 도용했다며 2004년 7월에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랑스의 CEA는 이미 2003년 5월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하였다. 하니웰사는 델라웨어지법에 자사의 LCD 관련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 LG필립스 LCD를 제소하였으나, 라이센스 계약체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가디언사는 2003년 10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노트북 LCD 시야각 개선위한 필름기술 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에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로 소를 취하하였다.

2. 화학 약품 분야

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에 대해 미국의 MSD가 중외제약을 2003년 10월에 판매중지 가처분소송 제기하였으나, 2004년 3월에 중외제약이 승소하였다. 중외제약은 MSD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유효심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005년 11월에 최종 승소하였다.

글락소스미스 클라인(GSK, 영)이 한국지방법원에 하나제약(2001년 4월), 아주약품(2002년 3월), 한미약품,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2004년 3월)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나제약과 아주약품은 GSK에 승소하였고, 한미·보령·유나이티드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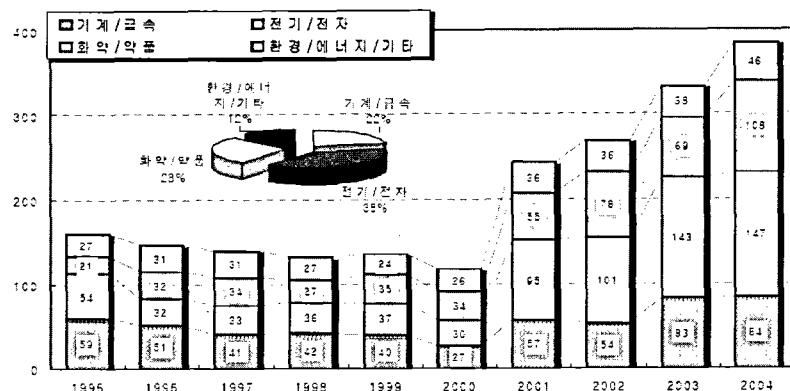
3. 기계분야

2006년 6월에 Automotive Technologies사는 BMW와 현대자동차의 자회사가 에어백의 압축과 전개 기술 등에 대한 11개의 에어백 관련 자사특허를 침해하였다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2006년 3월에 미국의 Cabot Microelectronics사는 제일모직이 CMP 슬러리(초정밀 연마제-정밀가공)에 대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무역법 제 337조 위반을 근거로 미국 ITC에 제소하고, 영구배제,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미국 ITC는 6월에 Cabot의 청구를 받아들여 동의명령(Consent Order) 판결하였다.

4. 미국 특허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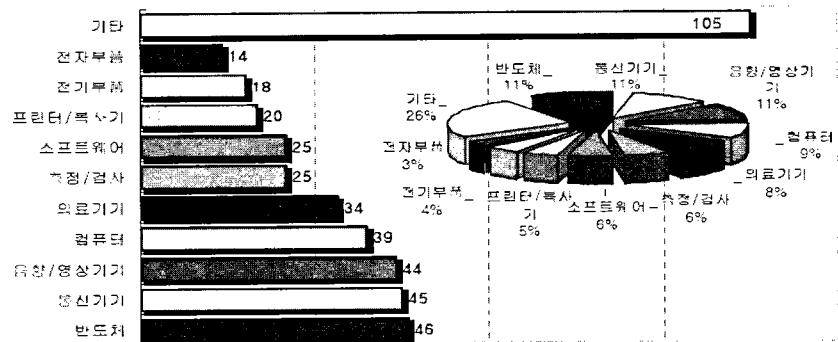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관련 분쟁 5,041건 중 분석대상 특허침해소송은 총 2,061건이었으며, 평균 소송기간은 약 3년 5개월, 원고 승소 또는 유리한 판결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 산업별 소송분포는 전기/전자/통신 분야가 평균 38%로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화학/약품분야가 28%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기계/금속분야의 경우 22%로 일정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기타분야는 12%이었다.



<그림 2> 산업별 소송 판결현황(연방지방법원), 특허청

분야별 품목 관례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 분야 관련 판례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 기술은 반도체 관련 내용 46건, 통신기기

관련 내용이 45건, 음향/영상기기 관련이 44건으로 전체의 약 33%에 달하며,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전기/전자 분야의 품목별 판례 현황

국내기업에 대한 법원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연루된 판례는 총 31건으로 확인되었고, 모두 전기/전자 분야의 기업이었다.

해당 분석 자료는 2004년 기준으로 침해소송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였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한국기업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결 론

국내 기업들이 잇달아 외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기술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이나 할 것 없이 특허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허 분쟁이 일단 발생하게 되어, 질 경 우에는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며, 만약 이기거나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미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 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분쟁 능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기업이 글로벌 경영을 위한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번째, 자사의 특허권을 국제적인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특히 상품의 상품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쟁사의 특허권을 조사해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특허권을 경쟁사와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경영의 방향을 설정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 및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일이다. 국가마다 다른 특허제도의 현황과, 개정 내용, 특히 침해소송에 관한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사의 특허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알려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특허 기술이나 상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고 있다.

세 번째, 각국의 특허제도에는 해당 국가 고유의 문화와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법원의 특허권 해석 또는 직무 발명에 대한 판단이 자국 관습과 차이가 있음을 미처 알

지 못하여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급화하는 능력에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화 상황에서 해외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기업경쟁력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다.

이제 기업의 미래는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와 활용은 그 의미와 중요도가 남다르다. 특히 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기업이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특허 경영을 신속히 받아들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길 만이 살길이다.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 정보 핸드북, 특허청, 2004.
2. 나종갑, “특허의 본질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 17호, 2005.
3. 전상우, “中企도 이젠 특허경영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2006.
4. 정성창, 「지적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2005.
5. 조경화, “기업성장을 위한 특허전략 및 분쟁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6. 허재관역, 「지적재산 경영전략」, 새로운 제안, 2003.
7. Kenneth C. Laudon, Jane P. Laud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ninth edition", 2005.
8. Russell L. Parr, "Technology Licensing", John Wiley & Sons, Inc. 1996.
9. <http://www.kipo.go.kr>, 특허청
10. <http://www.kipi.or.kr>, 한국특허정보원
11. <http://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12. <http://kipo.news.go.kr> 특허청 뉴스